

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』 일부개정조례안

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5월 4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1. 개정이유

‘골목형상점가’ 지정신청 시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/2 이상 동의규정을 삭제하여 지정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 정비 (안 제3조)

-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/2 이상 동의 절차 삭제
-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‘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’ 추가

나.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마련 (안 제3조, 안 별지서식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및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(참조:일자리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서대문구 홈페이지(<http://www.sdm.go.kr>) 메인화면 상단(구정소식/공고/입법예고)에 있는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·법인의 경우 단체명·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

(우편번호 03718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(연희동)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

※ 기타 문의 : 전화 02)330-4910, 팩스 02)330-1368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조례명 : 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』
- 성명(단체명) :
 - 주 소 :
 - 전 화 번 호 :

개정 내용	의견	비고